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24 선고 2021가단50441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나1803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24 선고 2021가단5044179 판결

전문

원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홍훈희

피고1. E

2. F

3. G

4. H

5. I

6. J 주식회사

7. K 주식회사

8. L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산

담당변호사 송기출

변론 종결 2022. 1. 27.

판결 선고 2022. 2. 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들과 소외 주식회사 M 사이에 2020. 8.자로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채권양도계약을 같은 목록 기재 각 취소 금액만큼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각자 별지 1 목록 기재 피고별 각 취소 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2,000만원, 원고 B에게 2,000만원, 원고 C에게 2,000만원, 원고 D에게 2,00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들과 소외 N 사이에 2020. 8.자로 체결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채권양도계약을 같은 목록 기재 각 '취소 금액' 만큼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각자, 별지 2 목록 기재 피고별 각 '취소 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2,000만원, 원고 B에게 2,000만원, 원고 C에게 2,000만원, 원고 D에게 2,00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M(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7. 7.경 강원 양구군 ○ 일원 토지에 개발하는 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분양하는 계약을 원고들과 각 체결하고 원고들로부터 각 2,000만원 합계 8,000만원의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나. 한편 소외 회사는 2017. 4. ~ 2019. 4. 사이에, 원고들 외에 피고들과도 이 사건 발전소를 분양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들로부터 총 267,000,000원의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사해행위 소외 회사는 2017. 6. 5. 이 사건 발전소 사업부지를 P으로부터 9억 8천만 원에 매수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P에게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4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그리하여 P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N은 2020. 8. 26. P이 소외 회사에게 2억 9천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이러한 합의 사실을 알게 된 피고들은 N에게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자신들에게 양도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N은 2020. 8. 피고들에게 위 매매대금 반환 채권 중 피고들의 분양대금 상당액인 2억 6천 7백만 원을 양도해 주었다.

피고들은 양도받은 채권을 원인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11299호로 P을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진행 중 P이 양수금을 피고들에게 자진 변제하였다.

2) 취소권의 행사 소외 회사가 원고들과 체결한 분양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소외 회사는 원고들에 대해 투자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피보전채권).

이러한 채무부담 상태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N이 소외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바, 이러한 채권양도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원고들의 채권 범위 내에서 피고들이 변제받은 금전을 원고들에게 반환하는 방법)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P으로부터 이 사건 발전소 사업부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자 및 그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대금 일부를 반환받기로 한 자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N 개인이다.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자 대표이사인 N이 자신의 개인 채권인 위 대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주었다.

다. 판단

증인 N의 증언만으로는 P에 대하여 대금반환채권을 가진 자 및 그 채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한 자가 N 개인이 아닌 소외 회사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가 한 것이어야 하는바, 원고들의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채권양도행위를 대상으로 원고들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P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소외 회사가 아니라 N이라면, 위 매수자금 중 3억 원을 N에게 제공한 소외 회사는 N에 대하여 ① 계약명의신탁상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수탁자인 N에 대해 제공해준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② 명의신탁 관계가 아니라면 매매대금 상당을 대여해준 것이므로 대여금 채권을 가지며, ③ 대여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대표이사인 N이 소외 회사의 금전(수분양자들이 투자한 투자금)을 횡령하여 자신의 매매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

되어 횡령 내지 배임을 구성하므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그 액수는 3억 원이다.

N은 소외 회사에 대해서 위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함에도 자신이 직접 채무를 부담하지도 않는

피고들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무자력 상태에서 양도하였다.

이에 소외 회사에 대해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가지는 원고들은 역시 무자력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이 사건 소로써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따르더라도 N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은 자신의 고유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소외 회사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한 것인바,

이로써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가 소멸됨으로서 소외 회사에 이익을 가져 온 것이므로 이는

소외 회사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원고들은 N이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탓하지만, N이 소외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한

금액만큼 소외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국 N이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한

금액만큼 N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액도 감소하게 되는 관계이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김홍도

별지